환매조건부채권

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 중 자금시장에서 팔고 살 수 있는 시장성 예금 상품으로는 지난 달에 소개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CD) 외에 환매조건부채권(RP)이 대표격이다.

RP는 되사는 조건을 붙인 채권

환매조건부채권은 흔히 RP(Repo, RePurchase agreement)라고 부른다.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환매' (還買) 란 도로 시들인다는 뜻, '환매조건부' 란 '되사는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다.

채권이란 돈이 필요한 거래자가 남에게서 돈을 빌리는 대신 발행해 건네주는 '채무증서'(debt instrument)다. 상환만기도 미리 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도 주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일종의 빚 문서다. 다만, 여느 빚 문서와는 다르다. 보통 빚 문서는 '차용증서'라고 부른다. 차용증서는 직접 돈을 융통한 거래자 사이에서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매매가 되지 않지만, 채권은 매매할 수 있다.

채권은 누가 갖고 있든 상관없이 만기가 되면 발행 자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는 시간 차이를 근거로 유동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투자자들 사이에 값이 매겨져 매매되고, 매매되면서수시로 가격이 변하므로 매매 차익을 노린 투자 수단으로 널리 유통된다. 채권은 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 환매 조건을 붙여 발행하면 환매조건부채권, 곧 RP가 된다.

금융기관. 단기자금 융통 위해 RP 거래

금융시장에서 RP를 발행·매매하는 거래자는 주 로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이 RP 를 거래하는 이유는 보유 채권을 활용해 단기자금을 용통하기 위해서다. 채권은 발행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도 받고 상환만기가 되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보통 거래 단위가 크고 만기가 길다. 때문에 금융기관처럼 거액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채권이 비교적 안전하게 장기 투자하는 데 적합한 금융수단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평소 채권을 많이 사서장기 보유한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다. 채권은 만기 전에도 매매가 가능하므로 보유 채권을 팔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만기 보유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고 싶지 않다면? 채권을 RP로 매매하면 보유 채권을 팔지 않고도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RP는 보통 환매 만기를 한 달(1개월물) 혹은 석 달(3 개월물)로 정해 거래한다. 그러므로 한 달 혹은 석 달 뒤 되사는 조건으로 일단 보유 채권을 넘겨 자금을 마련한 다음 RP 환매 만기 때 RP 보유자에게서 채권을 되사오는 것이다. 채권을 되살 때는 원금은 물론 RP 발행 후 환매까지 기간에 따라 확정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내줘야 한다. 이처럼 보유 채권을 만기 전에 팔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단기자금 수요 해결책으로 RP 매매를 즐긴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채권 매수자 입장에서도 RP 매매는 단기 여유 자금을 굴리기에 좋다. 보통 단기자금 거래에서는 장기자금 거래와 달리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기 어려운데 RP를 사들이면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RP는 사 두었다가 한 달 혹은 석 달 뒤 도로 팔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담보 역할을 하고, 그만큼 단기 여유자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굴릴 수 있다.

RP가 담보로 쓰인다는 점은 RP를 파는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 봐도 RP 매매의 또 다른 이점이다. RP 매매를 이용하면 보유 채권 중 물량이나 수요가 적어 매매가 잘 안되는 것도 쉽게 담보로 쓸 수 있고, 담보를 활용하는 만큼 그러지 않는 경우보다 자금 마련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이점 때문에 RP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인기 높은 대표 상품으로 꼽히 고, RP 금리는 단기금리의 대표 금리로 통한다.

거래 금액, 매매자에 제한 없어

RP 매매시장에는 매도자, 매수자 외에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자도 끼어든다.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서울외국환중 개주식회사 같은 금융중개전문회사와 증권사가 거래 중개 자로 나서 RP 매매를 연결해주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 만기는 1개월, 3개월을 위주로 하지만 만기를 얼마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기업이나 개인 고객과 거래할 때는 만기를 더 짧게(15일) 정해 적용한다. 만기 전 중도환매도 해준다.

거래 금액, 매매자에 특별히 제한은 없다. 다만, 개인이나 기업보다는 금융기관 간 거액 거래가 주를 이루고, 금융기 관이나 법인기업 간 거래에서는 보통 10억원 이상 거액 단 위로, 금융기관과 개인이 거래할 때는 소액을 단위로 한다.

RP는 만기가 되면 해당 RP를 고객에게 팔았던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에게서 도로 사주고 약속한 이자를 내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RP 매입이 사실상 확정이자를 주는 정기 예금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RP 상품을 흔히 'RP 예금' 이라고도 부른다.

RP. 예금자보호 받지 못해

RP는 금리가 정해져 있고 만기가 되면 판매사(은행, 증권사)가 되사주므로 여느 금융상품에 비해 안전하다. 단기 금융상품 치고는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단기 여유 자금을 맡겨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끌곤 한다. 그렇지만 RP투자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만기가 지난 뒤에도 이자를 주는지, 준다면 얼마나 주는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파는 RP 중에는 일단 만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자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금리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 므로 RP에 투자했을 때는 만기가 되면 돈을 찾든지, 아니면 일단 예금을 해지해 만기 이자와 원금을 찾고 나서 다시 예 금을 들든지 해야 한다.

둘째, RP는 확정금리 예금 상품과 다를 바 없지만, 만약 RP를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금자보호란 금융기관이 혹 망해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한사람 혹은 1개 법인이 금융기관 1개 사를 거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5천만원 이내의 원리금을 내주게 되어 있다.

RP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 일까? 얼마 뒤 도로 사주기로 약속해 놓고 RP를 판매한 금융기관이 고객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고객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거래하는 RP가 안전할지 알아보려면 해당 RP 판매사가 RP로 매매하는 기초채권이 우량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기초채권이란 RP 방식으로 매매하는 채권이다. 은행, 증권사가 RP로 매매하는 채권은 주로 국공채가 많다. 국공채란 국채, 지방채, 특수채를 포괄하는 채권의 통칭이다.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하철공채·지역개발공채 같은 채권이다. 특수채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토지공사·예금보험공사처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 가운데서도 국공채는 회사채에 비해 우량 채권으로 통한다. 회사채는 사기업이 발행하지만 국공채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행해 원리금 지급을 직접 책임지거나 보증하는 만큼 회사채보다 신용도가높기 때문이다. 즉, 국공채는 신용도가 높은데, 은행이나 증권사가 RP로 매매하는 채권은 주로 국공채이므로 기초채권이 우량한 셈이다. 그런 만큼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도원리금을 잃을까봐 크게 불안해 할 것은 없다. 기초채권이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량한지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RP를 살 때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거래 기초채권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